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장애인복지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관련 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18333호, 2021. 7. 27. 공포, 2022. 1. 28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·법인·단체를 명시함(안 제20조의5제1항)
- 나.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명시함(안 제20조의5제2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5(자료의 요청) ①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법인·단체”란 별표 2의2 제1호에 따른 기관·법인·단체를 말한다.

②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별표 2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.

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의2]

장애정도 정밀심사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등
(안 제20조의5 관련)

1. 자료의 열람 및 교부를 요청할 수 할 수 있는 기관·법인·단체

- 가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
- 나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도로교통공단
- 다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
- 라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- 마.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 제32조6항에 따라 정밀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·법인·단체

2. 열람 및 교부요청 할 수 있는 자료

- 가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,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
- 나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
- 다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에 관한 자료
- 라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·장애급여 산정에 관한 자료
- 마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
- 바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는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자료
- 사. 「병역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 관한 자료
- 자. 그 밖에 별표 2의2제1호에 따른 기관·법인·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법

제32조 6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제20조의5(자료의 요청) ①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법인·단체”란 별표 2의2 제1호에 따른 기관·법인·단체를 말한다.		
<u><신 설></u>		②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별표 2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. <u>[별표 2의2]</u> <u>장애정도 정밀심사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등</u> <u>(안 제20조의5 관련)</u> 1. 자료의 열람 및 교부를 요청할 수 할 수 있는 기관·법인·단체가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다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라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		

학교

마.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0조의2
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 제32조6
항에 따라 정밀심사를 수행하기
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
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
기관·법인·단체

2. 열람 및 교부요청 할 수 있는
자료

가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
요양급여,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

나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
수급권자에 대한 같은 법 제7조
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
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에
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

다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도로
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
검사에 관한 자료

라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
따른 장애등급 판정·장애급여
산정에 관한 자료

마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
학교생활기록부

바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

	<u>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는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자료</u> <u>사. 「병역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 관한 자료</u> <u>자. 그 밖에 별표 2의2제1호에 따른 기관·법인·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32조 6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</u>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299